

#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

|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
| 제 정 | 1999. 3.  |
| 개 정 | 2007. 11. |
| 개 정 | 2013. 5.  |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자연계·공학계열의 실험실습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본 대학 자연계, 공학계열의 각 실험실에 적용한다.

**제3조 (용어의 정의)** ①“관리”라 함은 모든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말한다.

②“실험담당교수”라 함은 각 실험실의 책임자로서 실험실습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.

③“담당부서”라 함은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관리과(2013.1.1)를 말한다.

④“환경오염물질”이라 함은 고농도의 중금속폐수, 폐유기용제, 특정유독물 등이 함유된 고농도폐액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특정유해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특정유독물을 말한다.

**제4조 (실험담당 교수)** ①각 실험실의 담당교수(이하 “실험담당교수”라 한다)는 실험시약(중금속류, 유기용제, 특정유독물 등)의 관리를 위하여 약품관리대장(또는 비품관리대장) 및 실험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, 관계자의 열람 요구시 언제든지 응하여야 한다.

②실험담당교수는 실험 후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분리 수거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, 수집된 폐수는 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실험담당교수는 환경오염물질이 싱크대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실험담당교수는 담당구역의 오염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**제5조 (담당부서 및 관리자)** ①담당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인계 받은 폐수는 일정한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수거·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 처리하여야 하고, 운영일지 및 폐기물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담당부서 및 관리자는 일반실험폐수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모든 환경오염 물질 및 실험폐수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학과의 실험기사)** ①실험기사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숙지하고 이를 관리·통제한다.

②실험기사는 실험조교의 실험시약 사용에 대한 실험일지를 점검한다.

③실험기사는 실험조교에게 실험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과 방지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인지시킨다.

**제7조 (환경관리위원회)** 환경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환경오염물질관리 실무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 (기타)** 환경오염물질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이를 수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6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. 1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5. 1부터 시행한다.